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 합리화 방안

25.12.04

허원 |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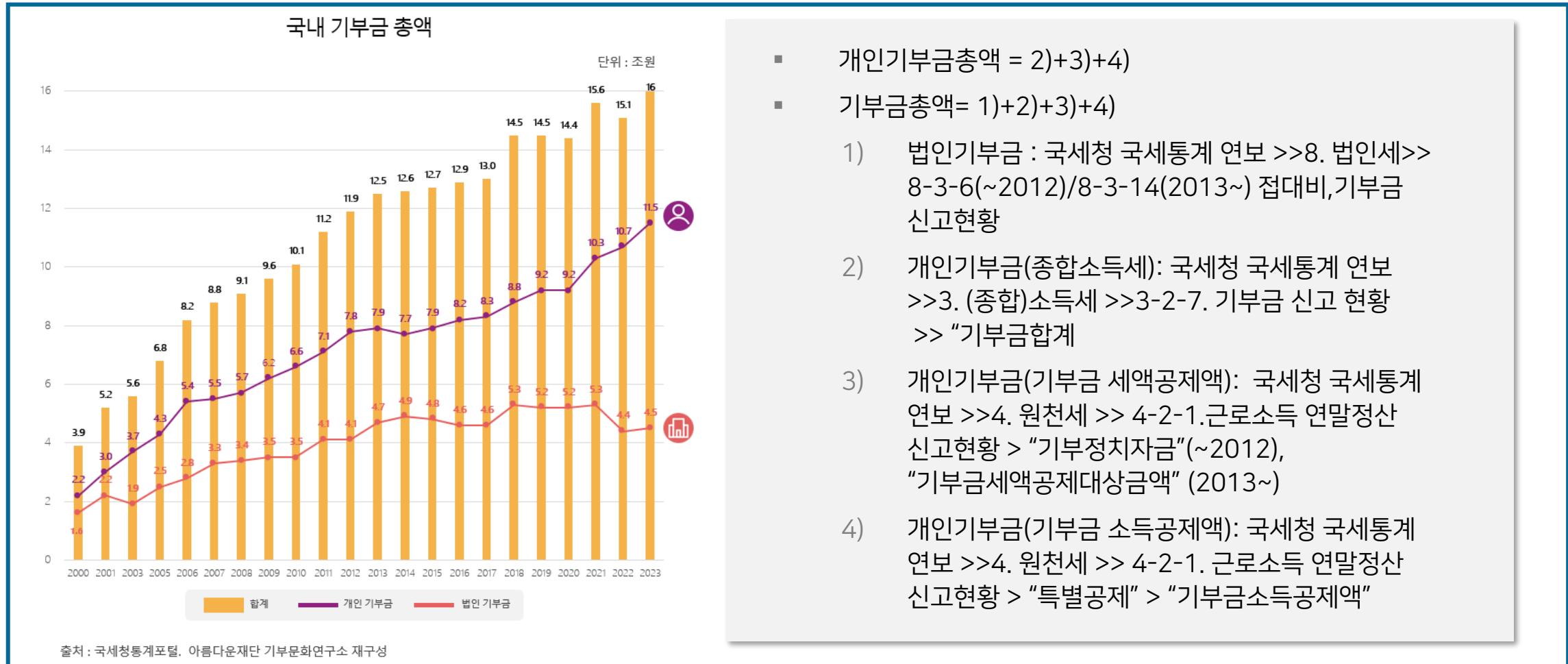
## 1. 우리나라의 기부 현황

국내 기부금 총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개인 기부금과 법인 기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23년 기부금 총액은 16조 원으로, 2022년 15.1조 원보다 9천억 원 가량 늘었음
- 개인기부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에는 11.5조 원으로 전년도(10.7조 원)에 비해 8천억 원 상승
- 법인기부는 4.5조 원으로 전년도(4.4조 원) 대비 약 850억 원 증가하였으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1.6% 하락
- 법인기부금 비중은 지난 20년간 평균 35%였으나, 2023년에는 28%로 7%p 감소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아카이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25)

## 1. 최근의 기부 경향



## 2. 최근의 기부경향

- ▶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함께 부를 이룬 베이비부머 세대인 70대 고령층이 지난 세월 가난을 겪으면서 이룩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고자 현금 기부 외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 기부를 희망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
  - ▶ MZ세대로 대변되는 젊은 층에서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방식의 기부를 선호하면서 기부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음
- 
- 그동안 우리나라 기부의 대부분이 현금 위주로 이루어진 이유로 현물기부보다는 현금기부가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현물기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여 현물기부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음

## 2. 최근의 기부경향

→ 기부활성화를 위한 연구들도 앞으로는 “계획기부(Planned Giving)”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기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계획기부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음

- 계획기부는 현금 외에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이 포함되어 자산 특성에 기인한 한계가 존재(가치평가, 처분, 리스크관리, 활용 등)
- 현재 계획기부 활성화와 관련하여 거론되는 어려움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기부 부동산의 현금화 및 집행, 배분에 관한 부동산 유동화 문제가 있음
- 해결방안으로서 공익목적의 금융상품(신탁/보험/연금 등)의 개발 및 확대 등 선진국형 기부방식의 도입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음

## 3. 현행 기부관련 세제의 문제점

- ▶ 현행 공익법인 기부 관련 세제는 공익법인과 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측면보다는 기부가 조세회피나 부의 부당한 세습 방편이라는 시각에서 공익법인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각종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 다양하게 변화된 기부 자산의 형태나 새로운 유형의 기부 방식에 적합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기부자에게 불친절하고, 나아가 기부의지를 꺾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 3. 현행 기부관련 세제의 문제점

→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현물 자산의 기부는 출연 단계에서부터 직접 사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현실적 제약과 제도적 미비가 존재하여 기부자와 기부단체 모두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부동산 기부의 경우 출연 받는 단체는 취득세 등 지방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기부자가 현금화하여 기부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식 기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해도 기준 이상 기부 받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며,
- 상장주식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나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거의 없어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함

## 4. 본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 공익법인에 대한 부동산기부 활성화 등을 위해  
공익법인의 부동산 관련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합리화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각종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평소 간직했던 좋은 뜻  
실현과 함께 세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는 현명한 대안으로써 부동산 기부가 주목받고 있음
- 그러나 출연받는 공익법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도 커지는 것이므로, 기부받거나 받은 재산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물 기부 중 주식 기부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부동산 기부 관련 연구는 많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함

### 1. 부동산 관계 법규에 의한 내재적인 이용제한

→ 부동산은 현금 재산과 달리 기본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부동산 관계 법규에 의한 내재적인 이용 제한이 다양하게 존재

- 공익법인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거나 매각하여 현가화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현금 기부보다는 다소 복잡한 것이 현실
- 부동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법규 제한이 달라져 기부 가능성이나 현금화하는 작업이 달라지게 됨

### 2. 매각 및 현금화 가능성

▶ 공익법인에서 기부 받은 부동산을 직접 활용하는 것은 다소 제한적인 경우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는 부동산이어야 함

- 기부가 가능하려면 핵심적으로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① 정당한 권리로부터 받아야 하고
  - ② 매각할 때 관계 법규에 의한 제한이 있어 매각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어야 함
  - ③ 수익성이 없거나, 무수익 자산이 아니어야 함

### 2. 매각 및 현금화 가능성-소유권 제한

→ 단독 소유권이 침해 받는 경우로서 종중재산(선산), 다수 공유자의 소유인 경우, 기타 다른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기부에 어려움이 있음

- 종중재산이나 특약이 있는 공유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계인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켜야 부동산 전체의 처분 및 이용 가능
- 공유 부동산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만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 후 처분이 제한될 수 있으며,
- 이론상 현금화는 가능하지만 단독소유권이 아닌 경우 장래 이용에 제한이 있어 매수자가 쉽게 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

### 2. 매각 및 현금화 가능성-현금화 제한

→ 임야,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작지, 도로, 구거(인공적인 수로) 등은 부동산 관계 법규에 따른 기본적인 이용 제한이 있어 현금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임야는 일반적으로 위치의 특성상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환가성이 낮고,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는 이주 및 경작을 해야 하는 제한이 있음
- 도로 및 구거 등은 어느 곳에 어떤 상황으로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환가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2. 매각 및 현금화 가능성-사례 1

#### <사례 1> 공유지분

70대 이OO 님 :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 땅을 직접 관리하기도 어렵고 기부를 해서 좋은 일에 쓰고 싶습니다. 그동안 관리는 주로 제가 했지만 소유권은 삼형제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제 소유의 1/3만 우선 기부하고 싶습니다.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서 간사와 계획기부 알아보기] 부동산 기부의 조건, 부동산 분과 김익창 위원, 2021.10.31)

- ▶ 공유 지분의 경우 소유권을 가진 가족들이 모두 동의 하에 부동산 전체를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토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기가 어려우므로 출연 받기가 어려움

### 2. 매각 및 현금화 가능성-사례 2

#### <사례 2> 복잡한 권리관계 및 건물 관리

50대 박OO 님 : 임대수익금을 받고 있는 경기도 소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직접 관리가 어렵고 관리를 대신 맡아 줄 가족도 없어 기부를 하고 싶습니다. 6개 호실에 각각 임차인들이 살고 있고, 계약기간은 조금씩 다르며 계약이 종료 되는대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을 기부 받아 관리/처분해줄 수 있나요?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서 간사와 계획기부 알아보기] 부동산 기부의 조건, 부동산 분과 김익창 위원, 2021.10.31)

- ▶ 공익법인이 기부자를 대신해 여러 권리관계가 얹힌 부동산의 다수의 임차인 관리를 전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공익법인 회계 구조상 진행이 어려움

### 3. 출연, 취득, 보유 단계의 세부담

→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가 기부하는 단계, 기부단체가 취득하는 단계와 보유하는 단계에서 각종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는 기부자가 부동산 자체를 기부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 받는 단체에게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만약, 기부단체에서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거나, 부동산의 직접 활용이 어려워 무조건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진행되어야 기부재산의 활용이 가능하다거나 하는 사유로 기부자에게 매각 후 현금 기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

### 3. 출연, 취득, 보유 단계의 세부담

→ 현행 관련 세제에서는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 규정이 일부 공익법인에게만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익법인들이 존재함

- 이러한 제한적 혜택의 제공이 합리적인 차별에 의한 것인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매각 후 기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기부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의 감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가한 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이라는 점과 증가한 가액만큼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른 여러 혜택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감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 연구에서는 추가 논의하지 않기로 함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제한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음(지특법 제22조 및 제45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위 감면 조항이 그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제한

→ 기부 현장에서는 취득세, 재산세가 부동산 기부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이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을 구체적으로 나열된 경우에만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익법인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실제 사례로서 재산세 부담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안을 고려하거나, 별도의 후원금을 모아 재산세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음
-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공익사업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나열로는 한계가 있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음

## 2. 3년 이내 의무사용의 적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에게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그리고 3년 이후 계속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지는데(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 기부를 받지 못하거나 출연을 받더라도 사후관리의 적용을 받아 증여세 및 가산세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음

-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민원제기나 이웃과의 분쟁, 공사 지연, 비용 부족 등으로 3년 내에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
- 부동산을 매각하여 공익사업에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3. 유류분 반환의 부담 가능성

→ 공익법인이 기부자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기부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하였으나 이후 유류분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다른 자산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부담을 질 수 있음

- 사후 유류분 분쟁의 위험을 피하고자 기부받은 자산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 내 사용의무 위반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음

## 4. 기본재산의 구분 기준 상이

▶ 비영리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구분되고, 설립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구분 및 운용·처분방법이 달라짐

구분	공익법인법	사회복지사업법	비영리법인의 설립규칙
기본재산의 구분	설립 시 기본재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편입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부동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 이사회 결의에 따라 편입된 재산	정관에서 정한 재산
기본재산의 운용 및 처분	매도·증여·임대·교환, 용도변경, 담보로 제공 운용수익, 기부금 등의 감소 성실공익법인 신고로 갈음	장기차입	정관에 정함에 따라

## 4. 기본재산의 구분 기준 상이

**<사례>**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은 올해 2월 70대 후원자에게서 1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기부 받았다. 후원자는 “어린이 양육과 관련된 곳에 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의 뜻대로 부동산을 처분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기부 받은 부동산이 처분이 쉬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으로 분류돼 있어서다.

출처: “부동산 기부 관련법, 시대 맞게 개정해야” 동아일보, 2020-09-07

- ▶ 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해당 단체 이사회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법인 설립 시 출연 받은 재산 위주인 기본재산의 처분을 신중하게 해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부받은 부동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5.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 불명확

→ 부동산 기부 시 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활용하게 되는데 이 평가 비용의 부담 주체가 기부자인지 기부받는 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음

- 세법상 현물 기부금 평가 규정은 개인과 법인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부자의 유형에 따라 동일한 부동산을 기부하더라도 세제혜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대상 확대

→ 다양한 형태의 현물기부를 지원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자산비율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자산형태인 부동산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현행 공익법인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나열된 적용범위를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 유사한 형태의 공익법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자 및 기부단체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의 공익법인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으로 ① 사업목적 기준, ② 공익법인 규모 기준, ③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제외 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대상 확대

### ① 사업목적기준

현행 지방세특례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와 제45조 제1항(학술단체) 및 제2항(장학법인)에서 규정하는 대상 외에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법

-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익법인 간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대상 확대

#### ② 공익법인 규모기준

- 공익법인의 규모에 따라 감면 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 현행 상증세법 상 주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기준이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소규모 공익법인 위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

## 04. 각 쟁점별 개선방안

모두를 위한 변화  
변화를 만드는 연결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대상 확대

#### ② 공익법인 규모기준

##### 공익법인 규모별 주요 신고의무

의무대상	주요 신고의무
<b>소규모 공익법인 : ①~③</b> (총자산 5억 원 미만 & 해당연도 총수입 3억 원 미만)	<b>① 결산서류 등 공시</b>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 <b>②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b> (기부금 등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b>③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b>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
<b>중규모 공익법인 : ①~④</b> (총자산 5~100억 원 or 해당연도 총수입 3~50억 원 미만)	<b>④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b>
<b>대규모 공익법인 : ①~⑤</b> (총자산 10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총수입 50억 원 이상 or 해당연도 출연재산 20억 원 이상)	<b>⑤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공시</b>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대상 확대

#### ③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제외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모 및 운영 능력별로 혜택 적용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

- '23.5.1. 기준, 7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491개 비영리법인(215개 공익법인)을 보유 중임(공정위보도자료,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 현황 등 분석·공개)

##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적용대상 확대

- ④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기준 또는 상증세법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기준 또는 운용소득 사용기준에 비례하여 수익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방법

- 수익사업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
  -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80%,100%) 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상증세법에 따라 운용소득의 8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

##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영구화 검토

→ 현재 부동산 기부에 따른 공익법인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24.12.31.(학술단체 및 장학법인) 또는 25.12.31(사회복지법인)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부동산 기부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그 적용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감면혜택의 영구화를 고려할 수 있음

- 현물기부 증가에 따른 공익법인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고, 출연받은 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실제 공익법인들이 각종 세금에 지출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부동산의 현금화가 용이하지 않은 점 외에도 후원금 용도 외 사용불가 조항, 후원금에서 허용하는 운영비 항목에 관련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 3년 이내 의무사용의 예외 사유 확대

▶ 부동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3년 이내 의무사용 위반에 따른 추징 규정의 예외사유를 보다 확대하여 사용 의무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임(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4. 유류분 반환의 특례 규정 신설

→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류분을 사전에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부자와 유류분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익법인도 안정적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나아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증가한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유산기부 시 상속세를 경감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5. 유산기부에 대한 상속세 경감 특례제도 도입

→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라 증가한 상속세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유산기부 시 상속세를 경감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유산기부 시 출연 재산을 상속세 과세 가액에 불산입하는데 그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상속재산의 10% 이상을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경감하는 특례제도를 입법화하여 유산기부 활성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 총 기부금 중 유산기부 비율 0.9% vs 영국 26%(2020년 기준).

### 6. 기본재산의 구분 기준 합리화 및 운용 및 처분방법 간소화

→ 현재 설립 근거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구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운용 및 처분방법을 간소화하여 공익법인이 유연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증여수단으로서의 악용, 정관 변경 등을 통한 혜택 규정의 남용 가능성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 현행 관련 제도들이 1950년대 제정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여 만들어져 관련 단체의 관리·감독 측면이 강조되어 있고, 이후 상증세법 또한 조세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규제·처벌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은 국가가 해야 할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民間에서 대신하여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여러 세제혜택의 제공은 당장의 세수입 감소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장기적이고 큰 틀에서 볼 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여러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음
- 현행 기부 관련 세제는 현금기부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현물기부 시 제도 미비에 따른 불합리한 세금 문제에 기부자와 공익법인 모두 노출되어 있음
- 사회 경제적 환경과 기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기부활동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김덕산(2021) 「현물기부와 관련된 법령상 쟁점과 사례분석」, 주간 세무경영 1699호.
- ❖ 김종근·전병욱(2012)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관련 증여세 과세문제: 구원장학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9(3).
- ❖ 문은희(2020)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독일의 형평면제처분제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이슈와 논점 1706호.
- ❖ 오문성(2019)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체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4(6).
- ❖ 윤재원(2016) 「공익법인의 과세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의 한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6(4).
- ❖ 윤현경·박훈(2017) 「공익법인 주식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정 요건에 대한 소고—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와 법 10(2).

- ❖ 이상신(2019)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유산기부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9(3).
- ❖ 이상신(2016) 「공익법인 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조세법연구 22(3).
- ❖ 이상신(2015)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제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1(2).
- ❖ 이중교(2023) 「현물기부의 과세문제에 대한 소고」, 세무와 회계 연구 12(3).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드는  
**변화연결**